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3-37호

「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6월 5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'22. 1. 13. 시행)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현행 도로명주소를 반영함으로써 구정의 신뢰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의 띄어쓰기 규칙에 따라 제명을 정비함
- 나.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해 인용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).
- 다.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의 위치를 현행 도로명주소로 변경함(안 제2조)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47-2)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6, FAX : 820-1474, E-mail : kyh06800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장승배기길 16(노량진동 47-2)”를 “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치)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<u>장승배기길 16 (노량진동 47-2)</u>에 둔다.</p>	<p><u>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1항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위치) ----- ----- <u>장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)</u>-----.</p>